

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제정	1998. 9. 11	조례 제 135호
개정	2005. 10. 5	조례 제 646호
	2007. 7. 1	조례 제 884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
일부개정	2011. 4. 15	조례 제 1142호
전부개정	2013. 10. 1	조례 제 1322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	2015. 7. 6	조례 제 1464호
일부개정	2017. 10. 2	조례 제 171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7. 12. 11	조례 제 1734호
일부개정	2019. 5. 9	조례 제 1925호
일부개정	2021. 6. 30	조례 제 215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 7. 6>

제2조(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) 「통합방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 제2항에 따라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소속으로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협의회의 통합·운영)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·운영한다. <개정 2017. 12. 11>

1. 「예비군법」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용인시 방위협의회
2. 「민방위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용인시 민방위협의회

제4조(협의회의 심의사항)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5. 7. 6, 2017. 12. 11, 2019. 5. 9>

1.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
 - 가. 통합방위 대비책
 - 나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
 - 다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 대책
2. 「예비군법 시행령」 제3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
 - 가.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·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

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- 나. 지역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
 - 다.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양양과 민·관·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
 - 라. 지역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
 - 3. 「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
 - 가. 용인시 민방위계획의 심의
 - 나.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
 - 다. 「민방위기본법」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
 - 4.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용인시 통합방위 협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 또는 용인시 통합방위 협의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이 제출한 안건
 -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,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③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 12. 11>
 - 1.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
 - 2. 예비군,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, 계몽 및 지원 대책
 - 3. 취약지역 대비책
 - 4.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
 - ④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 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
 - 2. 통합방위작전·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·관·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
- 제5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

위원회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 <개정 2015. 7. 6, 2017. 12. 11, 2019. 5. 9>

②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5. 7. 6, 2017. 12. 11, 2019. 5. 9, 2021. 6. 30>

1. 용인시의회 의장
2.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
3. 용인동부경찰서장
4. 용인서부경찰서장
5. 용인소방서장
6. 경기동부보훈지청장
7.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
8. 701군사안보지원부대 담당관
9. 국가정보원 담당관
10. 용인시 재향군인회장
11.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③ 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6, 단서삭제 2017. 12. 11>

제5조의2(위원의 해촉)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6, 2019. 5. 9>

1.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
2. 질병, 장기 출장 등 장기간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[제목개정 2019. 5. 9]

[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. 5. 9]

제5조의3(의장의 직무) ① 협의회의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협의회

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[본조신설 2019. 5. 9]

제6조(협의회의 운영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삭제 <2019. 5. 9>

제7조의2(간사)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둔다. <개정 2021. 6. 30>

1. 민방위담당 간사: 용인시 민방위업무담당 부서의 장
2. 심리전담당 간사: 용인시 공보업무담당 부서의 장
3. 작전담당 간사: 육군 제5171부대 3대대 작전장교
4. 예비군담당 간사: 육군 제5171부대 3대대 동원장교
5. 경찰담당 간사: 용인동부·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
6. 소방구조담당 간사: 용인소방서 현장대응단장

[본조신설 2019. 5. 9]

제8조(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)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, 읍장, 면장, 동장 소속으로 시·읍·면·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.

제9조(통합방위 지원본부 사무분장) 제8조에 따른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관할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 <개정 2015. 7. 6>

1.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
2.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영
3. 국가방위요소의 육성·지원
4. 통합방위 취약지역의 주민신고체계 확립

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5.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
6.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
7. 협의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의 시행
8. 향방작전 시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·수송 등 지원

제10조(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 ① 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, 본부장은 제2부시장이 된다.

〈개정 2015. 7. 6, 2017. 10. 2, 2019. 5. 9〉

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, 실장은 도시정책실장이 되며,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·통제한다. 〈개정 2015. 7. 6, 2019. 5. 9〉

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, 인력·재정 동원 지원반, 산업·수송·장비 동원 지원반, 의료·구호지원반, 보급·급식지원반, 통신·전산지원반,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한다.

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로 한다.

제11조(규정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5. 7. 6 조례 제1464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7. 10. 2 조례 제171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⑦③ 까지 생략

⑦ 「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부시장”을 “제1부시장”으로 한다.

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⑦5 부터 ⑧3 까지 생략

부칙 <2017. 12. 11 조례 제173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5. 9 조례 제192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6. 30 조례 제215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